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의2가목 중 “가축 먹이”를 “가축 또는 양식어류의 먹이”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의5 중 “폐배터리”를 “폐이차전지”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3.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에서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환적을 목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배출하는 동물성잔재물을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가. 임시보관시설에서 동물성잔재물의 보관량은 150톤 미만일 것
- 나. 임시보관시설에서의 동물성잔재물 보관 기간은 동물성잔재물이 임시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로부터 1일 이내 일 것

4.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보건·의료기관에서 배출한 의료폐기물이 아닌 수액팩, 수액병을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임시보관시설에서 수액팩, 수액병 보관량은 5톤 미만일 것

나. 임시보관시설에서의 수액팩, 수액병 보관 기간은 수액팩, 수액병이 임시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일 것

5.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비축 시설에 폐기물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비축하는 경우 제30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다만,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각호에 따른 제품·포장재 중 합성 수지 재질의 포장재를 선별·압축하여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이하 "비가림막 등"을 사용하여 흘날리거나 유·누출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부지 내 바닥을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포장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 중 “폐배터리 또는 태양광 폐패널”을 각각 “폐이차전지, 태양광 폐패널 또는 별표 4의 2 제2호가목 1)·2)에 따라 자원을 회수하거나 별표 4의2 제2호나목 1)

· 2)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하는 폐기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보관시설에 동물성잔재물을 보관하는 경우: 중량 150톤 미만, 1일 이내

7.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보관시설에 보건·의료기관에서 배출한 의료폐기물이 아닌 수액팩, 수액병을 보관하는 경우: 중량 5톤 미만, 5일 이내

8.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축 시설에 폐기물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비축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를 각각 “이하”로 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후관리계획서”를 “사후관리계획서(영 제24조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6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3(사후관리 제외 기준 및 절차) ① 영 제24조 단서에 따라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않은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가.  
가. 매립시설 운영 중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이 없을 것  
나. 매립시설 운영 중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할 것
2. 그 밖에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어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24조 단서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자(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폐쇄신고 전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정기검사 결과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1개월 이내에 사후관리 대상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 4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 0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 01-01-01 폐폴리에틸렌
    - 01-01-02 폐폴리프로필렌
    - 01-01-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
    - 01-01-04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 01-01-05 폐페놀수지
    - 01-01-06 폐폴리우레탄
    - 01-01-07 폐합성고무
    - 01-01-08 폐폴리스티렌
    - 01-01-09 폐아크리로나이트릴브타디엔스티렌(ABS수지)
    - 01-01-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 01-02 오니류
    - 01-02-01 폐수처리오니
    - 01-02-02 유리식각공정오니
    - 01-02-03 제지공정오니
    - 01-02-04 실리콘제조공정오니
    - 01-02-05 보크사이트잔재물
    -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 01-03 폐농약
    - 01-03-01 유기인계폐농약

- 01-03-02 유기염소계 폐농약
- 01-03-03 카바메이트계(Carbamate) 폐농약
- 01-03-99 그 밖의 폐농약
- 02 부식성 폐기물
- 02-01 폐산
  - 02-01-01 폐염산
  -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 폐축전지는 제외한다)
  - 02-01-03 폐질산
  - 02-01-04 폐불산
  - 02-01-05 LCD·반도체 공정의 폐산
  - 02-01-99 그 밖의 폐산
- 02-02 폐알칼리
  - 02-02-01 폐가성소다수
  - 02-02-02 폐암모니아수
  -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 0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 03-01 광재(鑛滓)
  - 03-01-01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 03-01-02 납 열처리·야금(冶金)공정광재

-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 03-01-04 철제조공정광재(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는 제외한다)
- 03-01-99 그 밖의 광재
- 03-02-00 분진
- 03-03 폐주물사 및 폐사
- 03-03-01 점토점결폐주물사
- 03-03-02 화학점결폐주물사
- 03-03-03 샌드블라스트폐사
-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 03-04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 03-04-01 폐내화물
- 03-04-02 폐도자기조각
- 03-05 소각재
- 03-05-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 03-05-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 03-05-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 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

우를 말한다)

03-05-07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

03-06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03-06-01 안정화처리물

03-06-02 시멘트고형화처리물

03-06-03 고화처리물

03-06-04 킬레이트(Chelate)처리물

03-06-05 폐석면고형화처리물(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03-06-99 그 밖의 고형화·고화처리물

03-07 폐촉매

03-07-01 금속성폐촉매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03-0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3-10 폐전지류

03-10-01 황산이 포함된 폐이차전지

03-10-02 알칼리가 포함된 폐이차전지

03-10-03 리튬계 폐이차전지(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

을 말한다)

03-10-04 이차전지 스크랩

03-10-99 그 밖의 폐이차전지(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  
을 말한다)

04 폐유기용제

04-01-0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 폐페인트 및 페락카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페락카

06 폐유

06-01 폐광물유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페절삭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  
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

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05 폐오일필터

06-01-06 기름함유 폐전선·폐케이블

06-01-07 폐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을 제외한다)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2-00 폐동식물유

06-03-00 그 밖의 폐유

07 폐석면

07-01 제품·설비(뿔칠로 사용된 것을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하는 폐석면

07-01-01 훔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

07-01-02 훔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

07-02-00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집진필터 등

0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 08-02-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
- 08-03-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의 것
- 08-04-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이 아닌 것
- 09 폐유독물질
  - 09-01-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 09-02-00 연구·검사용 폐시약
  -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 10 의료폐기물
  - 10-11-00 격리의료폐기물
  - 10-12 위해의료폐기물
    - 10-12-01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12-02 병리계폐기물
    - 10-12-03 손상성폐기물
    - 10-12-04 생물·화학폐기물
    - 10-12-05 혈액오염폐기물
    - 10-12-06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 11 수은폐기물
  - 11-01 수은함유폐기물
    - 11-01-01 수은함유 폐램프

- 11-01-02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 11-01-03 수은함유 폐전지
- 11-01-99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
- 11-02-00 수은구성폐기물
- 11-03-00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 12-00-00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 30-00-0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 51-01 유기성오니류
  - 51-01-01 정수처리오니
  - 51-01-02 하수처리오니
  - 51-01-03 분뇨처리오니
  - 51-01-04 가축분뇨처리오니
  - 51-01-05 펄프·제지공정오니
  -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
  - 51-01-07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 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
- 51-02 무기성오니류
  - 51-02-01 폐수처리오니
  - 51-02-02 정수처리오니

- 51-02-03 하수처리오니
- 51-02-04 하수준설토
- 51-02-05 건설오니
- 51-02-06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석재·골재 생산 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로 한정한다)
- 51-02-07 유리식각공정오니
- 51-02-08 실리콘공정오니
- 51-02-09 보크사이트잔재물
- 51-02-10 영농폐기물(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에 한정한다) 폐수처리오니
- 51-02-11 영농폐기물(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에 한정한다) 공정오니
-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 51-0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 51-03-02 폐합성고무류
-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 51-03-05 양식용폐부자
-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08 폐어망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4 광재류

51-04-01 고로슬래그

51-04-02 제강슬래그

51-04-03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51-04-04 선광공정광재(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되는 것은 제외한다)

51-04-99 그 밖의 광재류

51-05 분진류(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

51-05-01 제철공정분진

51-05-02 시멘트제조공정분진

51-05-03 발전시설분진

51-05-04 폐실리카 폼(규소철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51-05-99 그 밖의 분진

51-06 폐주물사 및 폐사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51-06-02 화학점결폐주물사

-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 51-06-04 폐여과사
- 51-06-99 그 밖의 폐사
- 51-07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 51-07-01 폐내화물
- 51-07-02 폐도자기조각
- 51-08 소각재
- 51-08-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 51-08-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 51-08-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 51-09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 51-09-01 안정화 처리물
- 51-09-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 51-09-03 고화 처리물
- 51-09-04 킬레이트(Chelate) 처리물
- 51-09-99 그 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51-10 폐촉매

51-10-01 금속성 폐촉매

51-10-02 페이온교환수지

51-10-03 폐멤브레인수지

51-10-99 그 밖의 폐촉매

51-11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51-12 폐석고 및 폐석회

51-12-01 폐석고

51-12-02 폐석회

51-13 연소잔재물

51-13-01 연탄재

51-13-02 액체연료연소재

51-13-03 석탄재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4 폐석재류

51-14-01 폐석분토사(석재·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응집 미립분을 포함한다)

51-14-02 폐석재

51-15 폐타이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15-01 자동차 폐타이어

51-15-02 그 밖의 폐타이어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51-17 동·식물성잔재물(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유통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51-17-01 동물사체

51-17-02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한다)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51-17-04 폐패각

51-17-05 폐모피류

51-17-06 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

51-17-07 동물털

51-17-08 동물성유지류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51-17-21 주정박

51-17-22 맥주박

51-17-23 유박유잔재물

- 51-17-24 초분류
- 51-17-25 커피찌꺼기
- 51-17-26 버섯폐배지
- 51-17-27 과채류(「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
-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 51-17-30 식재료 및 조리부산물(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의 배출자 중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의 배출자 중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것에 한함)
-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 51-18 폐전기전자제품류
-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 51-18-03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
-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 51-19-00 왕겨 및 쌀겨(「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1-20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 51-20-21 임목폐목재(건설공사·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줄기 등을 말한다)
- 51-20-2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나무 껍질·톱밥·

대패밥 등을 말한다),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23 폐도장목·폐목재포장재·폐전선드럼·건설현장 폐목재(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24 접착제·페인트·기름·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폐목재(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포함한다)

51-20-25 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포함한다) 및 건설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51-20-26 폐철도목재받침목

51-20-27 폐가구류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51-21 폐토사류

51-21-01 폐토사

51-21-02 건설폐토석

51-21-03 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

51-22 폐콘크리트류

51-22-01 폐콘크리트

51-22-02 폐철도콘크리트받침목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51-24-00 폐벽돌
- 51-25-00 폐블록
- 51-26-00 폐기와
- 51-27 폐섬유류
- 51-27-01 폐천연섬유
- 51-27-02 폐합성섬유
- 51-27-03 폐의류
- 51-27-04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별표 3에 따른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생한 것을 말하며, 같은 표 제14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것과 영 별표 2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51-27-99 그 밖의 폐섬유
- 51-28 폐지류
-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51-28-02 폐종이류
- 51-28-03 폐벽지
- 51-29 폐금속류
- 51-29-01 고철
- 51-29-02 비철금속
-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9-04 폐금속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51-30 폐유리류

51-30-01 폐유리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0-03 폐스마트유리

51-30-04 폐유리섬유

51-30-05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과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되,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미만의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것으로 한정한다(이하 “수은폐기물이 아닌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이라 한다)]

51-30-99 그 밖의 폐유리

51-31-00 폐타일

51-32-00 폐보드류

51-33-00 폐판넬

51-35-00 폐전주(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덮개류 등을 포함한다)

51-36 폐가스포집물

- 51-36-01 이산화탄소스트림
- 51-36-02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 51-37 폐냉매물질
  - 51-37-01 가전제품회수폐냉매물질
  - 51-37-02 자동차회수폐냉매물질
  -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 51-37-99 그 밖의 폐냉매물질
- 51-38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 51-38-01 음식물류폐기물
  - 51-38-02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 51-38-0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액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 51-38-99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
- 51-39-00 폐사료
- 51-40 폐소화기류
  - 51-40-01 폐분말소화기
  -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 51-41 폐전지류
  - 51-41-01 폐일차전지
    - 51-41-04 폐태양전지 · 전자기기페이스트 · 태양광 폐패널
    - 51-41-05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침수 · 화재 · 변형 · 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 ·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51-41-06 구동용 폐이차전지(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51-41-07 폐양극활물질(양극재 또는 전구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51-41-08 폐연료전지

51-41-99 그 밖의 폐이차전지(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51-42-00 폐의약품류

51-43-00 폐흑연가루

51-44-00 나노폐기물(나노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을 말한다)

51-45 폐차발생폐기물

51-45-01 폐차파쇄잔재물

51-45-02 폐차부품류

51-45-99 그 밖의 폐차발생폐기물

51-46-00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

51-47 조명폐기물

51-47-01 폐형광등

51-47-02 폐발광다이오드조명

51-99-00 그 밖의 폐기물

별표 4의2 제3호가목4)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또는 양식어류”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1) 중 “만드”를 “만들거나 폐기물을 무게기준 50% 미만으로 혼합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의2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로 한다.

별표 4의3 제1호 02-01-06의 폐기물 분류번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3-10	폐전지류		
03-10-01	황산이 포함된 폐이차전지	R-2-1, R-3-2, R-3-4, R-4-7, R-10	해당 없음
		R-4-9, R-5-1, R-10	해당
03-10-02	알칼리가 포함된 폐이차전지	R-2-1, R-3-2, R-3-4, R-4-7, R-10	해당 없음
		R-4-9, R-5-1, R-10	해당
03-10-03	리튬계 폐이차전지(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03-10-04	이차전지 스크랩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03-10-99	그 밖의 폐이차전지(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	----------------------	--	--

별표 4의3 제2호 51-01-05의 재활용 유형란 중 “R-6-1”을 “R-6-1, R-6-2”로 하고, 같은 표 51-01-07의 재활용 유형란 중 “R-6-1”을 “R-6-1, R-6-2”로 하며, 같은 표 51-17의 폐기물의 종류란 중 “음료제조업”을 “음료제조업, 유통업”으로 하고, 같은 표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17-27	과채류(「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	R-5-1, R-5-2, R-5-4, R-6-1, R-10	해당 없음
51-17-30	식재료 및 조리부산물(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의 배출자 중 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의 배출자 중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것에 한함)	R-5-1, R-5-2, R-5-4, R-6-1, R-10	해당 없음

별표 4의3 제2호 51-41-01의 폐기물의 종류란 중 “1차폐전지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폐일차전지”로 51-41-05의 폐기물 종류란 중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로 하며, 51-41-02 와 51-41-03의 폐기물 분류번호를 삭제하고 다음표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41-06	구동용 폐이차전지(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발	R-2-1, R-2-2, R-3-1, R-3-2, R-3-3, R-4-1,	해당 없음
----------	----------------------------	---	-------

	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R-10	
51-41-07	폐양극활물질(양극재 또는 전구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41-08	폐연료전지	R-2-1, R-2-2,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41-99	그 밖의 폐이차전지(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별표 5 제3호나목8) 및 같은 호 다목8) 중 “폐배터리”를 각각 “폐이차전지”로 하고, 제5호다목1) 중 “경우”를 “경우, 그밖의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제6호아목2) 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별표 5의3 제1호마목1)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1)다)(5)(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전기자동차에서 분리되어 재제조·재사용한”을 “리튬계 폐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 또는 구동용 폐이차전지(재제조·재사용한”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양극재 등의 제

조 과정”을 “배터리·양극재 등의 제조과정”으로 하며, 같은 (5) (가) 중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폐이차전지”로 하고, 같은 목 2)나)(2) 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4호”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로 하며, 같은 호 다목1)다)(2) 중 “가축”을 “가축 또는 양식어류”로, “같은 법 제14조제3항”을 “같은 법 제14조제4항”으로, “충족하여야 한다”를 “충족하여야 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사료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바)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농지 소유주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의 개량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토사류와 혼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것으로 한정하며 1)가)(7)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7 제5호가목1)가)(1)(다), 같은 1) 나)(3) 및 같은 목 2)라)(1) 및 (2) 외의 부분 중 “폐배터리”를 각각 “폐이차전지”로 하고, 같은 라) (1) 중 “배터리”를 “폐이차전지”로 하며, 같은 (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전이 완료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만 처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7 비고 제8호다목 중 “대형폐기물”을 “대형폐기물 또는 음식물류폐

기물”로 한다.

별표 8 제4호하목 단서 중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로, “임시보관시설”을 “임시보관시설이나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비축 시설”로 하고, 같은 호 너목 중 “폐배터리”을 “폐이차전지”로 한다.

별표 9 제3호자목2)라)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광학선별장치를 갖추기 곤란한 경우 등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11 제2호나목2)차)(5)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2)차)에 (6)(가)에서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 9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은 (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스배제층·차단층 및 배수층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의 규정에 따른 최종복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지정폐기물이 아닌 연소잔재물 중 연탄재·석탄재 등을 매립한 경우로서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토지이용 계획서 등에 준하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경우

(나) 별표 4의2 제2호나목2)또는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매립시설 상부 60cm 이상 매립한 후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토지이용 계획서 등에 준하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경우

(다) (가)나 (나)에 해당하여 최종복토를 아니할 경우 토지 이용 전까지 공기중에 노출된 매립층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6 제4호 중 “가축”을 “가축 또는 양식어류”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로 한다.

별표 21 제2호다목6)라)(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멘트 소성로에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시멘트대체원료로 재활용할 때 재활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고	해당 업체의 폐 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1개 월	해당 업체의 폐 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3개 월	해당 업체의 폐 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6개 월
(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또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별표 21 제2호다목6)라)(2)에 (가)부터 (라)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	----	----------	----------	----------

(나) 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경고	1개월	3개월	6개월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경고	1개월	3개월	6개월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경고	1개월	3개월	6개월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리를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제  
조에 재활용하는 경우

11. (생략)

제11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  
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6호 단서에  
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신설>

----- 폐이차  
전지-----  
-----

11. (현행과 같음)

제11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  
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도  
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  
관시설에 적재능력이 작은 차  
량에서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  
로 옮겨 실기 위한 환적을 목  
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  
법」 제21조에 따른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  
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  
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배  
출하는 동물성잔재물을 보관  
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  
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  
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  
야 한다.

가. 임시보관시설에서 동물성

<신 설>

<신 설>

잔재물의 보관량은 150톤  
미만일 것

나. 임시보관시설에서의 동물  
성잔재물 보관 기간은 동  
물성잔재물이 임시보관시  
설에 도착한 날로부터 1일  
이내 일 것

4.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도  
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  
관시설에 보건·의료기관에서  
배출한 의료폐기물이 아닌 수  
액팩, 수액병을 보관하는 경  
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임시  
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임시보관시설에서 수액  
팩, 수액병 보관량은 5톤  
미만일 것

나. 임시보관시설에서의 수액  
팩, 수액병 보관 기간은 수  
액팩, 수액병이 임시보관  
시설에 도착한 날로부터 5  
일 이내 일 것

5.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자원  
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 제34조의5제3항에



받거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  
시설

받거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  
시설(다만, 폐기물 재활용업자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만  
든 중간가공폐기물(자원의 절  
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  
행령 제18조 각호에 따른 제  
품·포장재 중 합성 수지 재질  
의 포장재를 선별·압축하여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에 한한  
다)은 비가림막 등을 사용하  
여 흘날리거나 유·누출의 우  
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부지 내 바닥을 시멘트·아스  
팔트 등으로 포장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법 제2  
5조제9항제2호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1일 재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신 설>

<신 설>

6.·7. (생 략)

② (생 략)

제47조(권리·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4호

일 이내

7.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제11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보관 시설에 보건·의료기관에서 배출한 의료폐기물이 아닌 수액팩, 수액병을 보관하는 경우: 중량 5톤 미만, 5일 이내

8.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제11조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축시설에 폐기물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비축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9.·10.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권리·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 ① -----  
-----  
-----이하-----  
-----  
-----  
-----

의3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5. (생략)

②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승계신고인”이라 한다)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5. (생략)

③ ~ ⑤ (생략)

제6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자(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  
---이하-----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 ① -----  
-----  
-----  
-----  
-----



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매립시설 운영 중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이 없을 것

나. 매립시설 운영 중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할 것

2. 그 밖에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어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24조 단서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자(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폐쇄신고 전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기검사 결

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정기검사 결과  
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가 필요  
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1개월  
이내에 사후관리 대상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